

목 차

CONTENTS

2023년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서 목차

인사말	02
① 신사2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04
② 신사2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05
③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06
④ 2022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감사 보고	07
⑤ 2023년 주민자치회 전체 사업별 회계예산	10
⑥ 2023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	11
⑦ 2024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사업선정 보고	19
⑧ 2023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사진	22
⑨ 2023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소감	26
별첨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8

인사말

Greeting



안녕하세요?
신사2동 주민자치회 회장 박은미입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신사2동 주민자치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역량이 강화되고, 진심으로 지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동 특화사업인 『편백나무 숲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편백숲을 알리고 또 그 결과물로 문집까지 발행을 하게 되어 너무나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 축제’나 ‘우리 마을 작은음악회’는 주민분들의 삶에 힐링이 되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1년 내내 의제 발굴과 사업 실행이 계속되었고 동축제와 지신밟기, 한마음 체육대회, 어울림 한마당 등등 실 새 없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들과 한마음으로 단합이 되어 많이 웃고 같이 보람을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열정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사2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신사2동 주민자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2월 30일
신사2동 주민자치회 회장 **박은미**



안녕하세요.
‘함께해서 행복한 신사2동’ 동장 임춘재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맞이한 2023년은 그야말로 참아왔던 에너지가 폭발하고, 그 어느 해보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열정이 돋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우리 마을 누구나 스타’와 ‘어르신 인권 교육’ 등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주민을 아우르는 분과별 추진사업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까지.

“우리는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없고, 함께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헬렌켈러의 말처럼 함께하는 힘을 멋지게 보여 주셨습니다.

특히 신사2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2024년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사전투표에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신 신사2동 주민자치회의 저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을 곳곳을 둘러보면 주민자치회의 눈길과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주민이 직접 가꿔나가는 지역사회의 힘을 새삼 실감합니다.

늘 우리 동네 신사2동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일궈나가는 신사2동 주민자치회를 늘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30일
신사2동 동장 임춘재

신사2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주민자치활성화분과		환경개선분과		건강복지분과		교육문화분과	
1	분과장 이인숙	1	분과장 권영옥	1	분과장 이재현	1	분과장 이혜용
2	분과총무 강신호	2	분과총무 박현숙	2	분과총무 박경준	2	분과총무 이연옥
3	김무빈	3	김옥자	3	이선자	3	강미선
4	배경임	4	박세은	4	임현심	4	김경희
5	이경옥	5	박영옥	5	윤진희	5	김동한
6	이병호	6	박춘희	6	정희정	6	김혜영
7	이정화	7	안정옥	7	조봉임	7	서동기
8	이준덕	8	양명희	8		8	오동주
9		9	정찬일	9		9	천선우
10		10	한종택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13		13	
분과위원		분과위원		분과위원		분과위원	
배영숙 최명희		고웅 김준호 서명현 진정임 채경녀					

신사2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 협력적 사회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통해 마을의 개선하고 싶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사2동 주민을 대표하는 봉사 단체입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 37명(2023. 11. 17. 기준)

총원	성 별(명)		연 령 별(명)				단체,개인 별(명)	
	남	여	40대	50대	60대	70대	단체	개인
37	9	28	6	14	14	3	12	25

▣ 주민자치회 운영진 현황(2023. 11. 17. 기준)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	분과장
박은미	김무빈	이병호	전지영	이은숙	이인숙 권영옥 이재현 이혜용

▣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현황(2023. 11. 17. 기준)

분과명	분과장/분과총무	위원	분과원	주요업무
주민자치활성화 분과 8 / 2	이인숙, 강신호	김무빈, 배경임 이경옥, 이병호 이정화, 이준덕	배영숙, 최명희	비단뜨락 카페와 모두의 공간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기획 등
환경개선분과 10 / 4	권영옥, 박현숙	김옥자, 박세은 박영옥, 박춘희 안정옥, 양명희 정찬일, 한종택	고 용, 김준호 서명현, 채경녀 진정임	마을 안전교육과 환경개선, 화단가꾸기 기후 및 탄소중립 교육
건강복지분과 7 / 0	이재현, 박경준	이선자, 임현심 윤진희, 정희정 조봉임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의제 발굴
교육문화분과 9 / 0	이혜용, 이연옥	강미선, 김경희 김동한, 김혜영 서동기, 오동주 천선우		문화행사, 시민교육, 유아·청소년지도 프로그램, 영화제나 마을 축제 계획 및 지원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시 기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3. 1.~11.	정기회의 및 운영진회의	- 2032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 - 정기회의 (대면11회) - 운영진회의 11회 진행
2023. 1.~3.	2기 위촉식 및 임원선출 22년 회계 및 사업 감사 분과구성 및 운영세칙 개정 등	- 1월 3일 : 2기 위촉식 및 임시회의, 임원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 1월 6일 : 임원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 1월 10일 : 임원선거 - 1월 16일 : 2022년 회계 및 사업 감사 - 1월 31일 : 분과구성워크숍 - 3월 7일 : 세칙개정준비위원회 1차회의 - 3월 14일 : 정기회의에서 운영세칙 개정안 최종승인
2023. 3.~4.	2023년 마을의제 발굴 2023년 분과 사업 실행	- 3월 31일 : 마을의제발굴 워크숍 - 3월~11월 : 각 분과 사업 진행 - 4월 28일 : 역량강화 워크숍
2023. 4.~7.	자매결연지 방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주민공론장 등	- 4월 12일 : 포천시 영북면 방문(자매결연 협약식) - 5월 8일 : 은평구시설관리공단-신사2동주민자치회 업무협약식 - 5월 25일 : 1차 주민과 함께하는 공론장 - 6월 25일 : 1동1대학(성균관대학교) 협약식 체결 - 7월 11일 : 2차 주민과 함께하는 공론장
2023. 6.~8.	축제 및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회의등	- 6월 27일 : 축제 및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1차회의 - 7월 26일 : 축제 및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2차회의 - 8월 24일 : 축제 및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3차회의
2023. 8.~9.	2023년 주민총회 및 비단산 문화축제 등	- 8월 9일 : 주민총회 공고문 개시 - 8월 21일~9월3일 : 사전투표시작 - 9월 9일 : 주민총회 개최 및 비단산 문화축제 - 9월 16일 : 2023. 구 참여예산 총회
2023. 9.	2024년 마을의제 선정	- 일상의 심표, 힐링 음악회 -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 - 「꿈나무 교실」 - 신사2동 관내 전광판 설치 - 어두운 골목길 밝혀주는“로고젝터”설치 - 찾아가는 환경 골든벨(환경교육) - 모아모아와 함께하는 플리마켓 -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 미래인문학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1동1대학) - 편백나무 숲 힐링 프로그램
2023. 10.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등	- 10월 7일 : 제2회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 10월 20일 :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하는 불광천 EM휴공던지기
2023. 11.~12.	2023. 하반기 의제개발 워크숍 등	- 11월 14일 : 2023. 하반기 의제개발 워크숍 - 각 분과사업 마무리 - 12월 12일 성과공유회

신사2동 주민자치회 감사 보고

▣ 감사 개요

| 근 거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

| 감사일시 | 2023. 1. 16. 11:00

| 감사장소 | 신사2동 주민센터 2층 모두의 공간

| 감사자 | 조규태 회계감사, 이병호 사업감사

▣ 감사 내용

①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번호	감사내용	감사결과
1	분과위원 모집과 분과구성의 적절성	위원 개인의 적성에 맞춰 모집과 구성이 훌륭함.
2	분과별 자치계획서 작성	분과원의 중지를 모아 성실히 작성함.
3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도 지도 면밀 했음.
4	주민총회	예상 외의 성과를 거둠.
5	주민총회 결과 정리와 주민공유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로 정리됨.
6	실행을 위한 분과 재정비	분과 재정비는 해 볼만한 과제임.
7	사업평가와 사업계획	긍정적 평가 및 광범위한 계획으로 발전요망.
8	각종 회의(분과회의, 사무국회의, 민관협력회의, 임원진 또는 운영위위원회의) 운영의 적정성	적극 참여 의식을 갖자.
9	정기회의의 민주적 운영	효과적인 민주적 운영임.

② 회계 부문 주민자치회 예결산 및 회계 처리 과정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주민자치회 예산수립(세입과 세출)의 적정성 : 예산과목 준수 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양호
2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양호
3	예산편성시 모든 예산의 누락여부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에 행사실비보조금 편성 누락 예산변경 신청을 통해 수정 확인.
4	주민자치회 명의의 전용통장 개설 및 사용 여부	양호
5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양호
6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양호
7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양호
8	자치회관 수입 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 누락계상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양호
9	지출서류(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양호
10	예산의 허위성 지출 여부	양호
11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의 적정성	양호
12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	양호
13	근무시간에 따른 간사활동비 지급의 여부 (기타소득세 납부여부)	양호

③ 행정 서류와 각종 문서, 장부 및 직인 관리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진회의 회의록 비치	양호
2	주민자치회 위·해촉 사임대장	양호
3	직인대장과 문서대장	양호
4	직인의 보관관리	양호
5	세무서 고유번호증 보관관리	양호
6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 필요서류	양호
7	연회 재물조사 실시 여부, 조사표 부착여부	양호

④ 사업감사

- 1)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여부 : 양호
 - 2) 주민자치회의 안정과 분과 모임의 활성화 여부 : 양호
 - 3) 주민요구에 맞는 의제사업 진행여부 : 양호
- ※ 회의록 및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⑤ 회계감사

- 1) 상반기 사업 예산집행 결과 : 양호
 - 2) 집행기준 준수와 증빙 자료 : 양호
- ※ 지출 및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 감사 총평

○ 회계감사 총평

- 열악한 환경에 각자 최선을 다한 흔적이 돋보입니다.

○ 사업감사 총평

-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고 보관이 매우 양호합니다.
- 의제 발굴 최선을 다함 추후에도 더욱 기대됨
-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애항심과 애민심이 투철하심
-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2023년 1월 16일

신사2동 주민자치회 감사 **조규대** (서명 생략)
신사2동 주민자치회 감사 **이병호** (서명 생략)

은평구청장 귀중

2023년 주민자치회 전체 사업별 회계예산

(12월 31일 기준)

사업구분	항목	세부내역	금액(원)	집행금액	잔액	
합계	총 사업비		20,000,000	20,000,000	0	
주민자치회 사업비	주민자치회 운영비	사무관리비	2,758,830	2,758,830	0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796,770	796,770	0
			행사운영비	350,900	350,900	0
		행사실비보상 금	주민자치회 분과운영 등	1,093,500	1,093,500	0
	의제개발비 및 주민총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4,017,000	14,017,000	0
		행사실비보상 금	의제발굴 등 성과공유회	983,000	983,000	0
	(동) 지역사업	1. 편백나무 숲 힐링 프로그램		10,000,000	9,919,150	80,850
		2. 봉산, 불광천 바른자세로 함께 걷기 프로젝트 (나의 건강루틴 바르게 걷기)		14,000,000	8,793,450	5,206,550
3. 사랑의 도시락		9,500,000	6,630,270	2,869,730		
4.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LED 벽화 만들기		20,000,000	위탁하여 사업집행			
5. 우리 마을 누구나 스타		8,500,000	7,096,500	1,403,500		
6. 신사동 우리 마을 작은 음악회		20,000,000	18,520,000	1,480,000		
7.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꿈나무 교실”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		13,000,000	11,014,130	1,985,870		
8. 다시 태어나는 신사2동 어르신 프로젝트 (어르신 인권 찾기 교육)		5,000,000	4,654,100	345,900		
(동)문화축제	일반운영비		17,169,000	17,169,000	0	
	행사실비지원금		831,000	831,000	0	

2023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 (등) 지역사업 8건

| 사업명 | 우리마을 작은 음악회

| 사업실행분과 | 주민자치활성화분과

| 사업내용 | 동네를 대표하는 장소, 공유 공간에서 온오프라인 음악회를 진행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 사업결과 | 총 3회차 진행, 총 410명 참여

- 1회차 : 6월17일(토),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 2회차 : 9월21일(목), 구립신사노인복지관

- 3회차 : 11월10일(금), 은평신현 나비채플

| 실행기간 | 4월~11월

| 수혜대상 | 신사2동 주민

활동사진



| 사 업 명 | 우리마을 청소년 누구나 스타

| 사업실행분과 | 주민자치활성화분과

| 사 업 내 용 | 지역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고,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

| 사 업 결 과 | - 접수 : 4월12일(수) ~ 5월12(금) 신청서 접수
- 예심 : 5월16일(화) / 5월19일 (금) 개별통보
- 본선 : 6월3일(토) 14:30 은평신협 나비채플
- 참가자 69명, 관람 250명 참여

| 실 행 기 간 | 4월~6월

| 수 혜 대 상 | 신사2동 거주 학생, 관내 재학중인 초·중·고등학생

활동사진



| 사 업 명 | 편백나무 숲 힐링프로그램

| 사업실행분과 | 환경개선분과

| 사 업 내 용 | 봉산 편백나무숲을 숲해설사와 함께 걷고 힐링된 마음 책쓰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표현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남기는 내숲길 문집을 만들어 편백나무숲을 알림

| 사 업 결 과 | ① 힐링프로그램 5회 진행

- 1차 : 2023. 4. 22.(토) 10시-12시, 회차당 20명

- 2차 : 2023. 4. 29.(토) 10시-12시, 회차당 20명

- 3차 : 2023. 5. 6.(토) 10시-12시, 회차당 20명

- 4차 : 2023. 5. 13.(토) 10시-12시, 회차당 20명

- 5차 : 2023. 5. 20.(토) 10시-12시, 회차당 20명

② 「내숲길 지나 편백숲」 100부 발행(10월25일)

| 실 행 기 간 | 4월~10월

| 수 혜 대 상 | 관내 주민

활동사진



- | 사 업 명 |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LED 벽화 만들기
- | 사업실행주체 | 도시계획과
- | 사 업 내 용 | LED조명 벽화를 만들어 야간에 어두운 도로를 밝게 비춰주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개선하여 불안감 없이 통행로 이용
- | 사 업 결 과 | - 2월 : 대상지 사전답사
 - 3월 : 업체 선정 및 디자인 개발 용역
 - 5월 : 은평구 공공디자인 위원회 자문
 - 6월~7월: 계약심사
 - 8월 : 벽화 조형물 발주
 - 9월 : 조형물 시공 및 준공
- | 실행 기간 | 2월 ~ 9월
- | 수혜대상 | 신사2동 주민

활동사진



◀ 실행 전



◀ 실행 후

| 사업명 | 봉산, 불광천 바른자세로 함께 걷기 프로젝트(나의 건강루틴 바르게 걷기)

| 사업실행분과 | 건강복지분과

| 사업내용 | 바른자세 걷기로 건강한 신체 회복과 건강한 걷기 모임 활성화를 통해 이웃 간의 소통으로 우울증 감소와 행복감을 느끼도록 돕는다.

| 사업결과 | 봉산일대에서 밸런스 워킹 강사와 총 26회차 진행, 총 520여 명 참여
매주 수요일 16:00, 토요일 10:00 진행

| 실행기간 | 3월 ~ 10월

| 수혜대상 | 은평구민 및 신사2동 주민

활동사진



| 사 업 명 | 사랑의 도시락

| 사업실행분과 | 건강복지분과

| 사 업 내 용 | 매주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마을 청소년 봉사활동을 통해 필요한 가정에 배달

| 사 업 결 과 | 총 7회차 진행, 25가구(총 700여 명)에 도시락 전달

| 실 행 기 간 | 4월 ~ 9월

| 수 혜 대 상 | 관내 어르신 및 도시락 이용을 원하는 가정25가구

활동사진



| 사 업 명 | 아이의 꿈에 날개를 달다

| 사업실행분과 | 교육문화분과

| 사 업 내 용 |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의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국어, 창의사고력 수학 및 독후활동, 버닝(미술)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사 업 결 과 | 독서 10회X12명=120명 / 창의수학 국어 21회X11명=231명
버닝 4회X13명=52명, 1회X200명=200명 진행함

| 실 행 기 간 | 3월 ~ 9월

| 수 혜 대 상 | 신사2동 관내 초등학생

활동사진



| 사 업 명 | 다시 태어나는 신사2동 어르신 프로젝트 (어르신 인권 찾기 교육)

| 사업실행분과 | 교육문화분과

| 사 업 내 용 | 다른 세대와 어울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과 노인학대 예방교육

| 사 업 결 과 | 총 11회 교육프로그램 진행, 총 240명 교육

- 인권교육 및 힐링원예교실 : 어르신 20명X9회=180명

- 노인생애체험 ① 고등학생(복지관 정기 봉사활동 대상자) : 20명X1회=20명

② 초등학생(학교 방문) : 40명X1회=40명

| 실 행 기 간 | 9월 ~ 11월

| 수 혜 대 상 | 관내 학생 및 주민

활동사진



2024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사업선정 보고

(제3회 주민총회 2023년 선정, 2024년 실행)

분야	연번	사업명	투표수 (3~9등의표)	예산액 (천원)
사전투표 : 2,153명, 현장투표: 41명, 무효: 19명			2,194	100,000
프로그램	1	일상의 심표, 힐링음악회	1,107	12,000
	2	아이의 꿈에 날개를 달다	779	8,000
시설	3	신사2동 관내 전광판 설치	1,955	20,000
	4	어두운 골목길 밝혀주는 “로고젝터” 설치	2,035	10,000
환경	5	찾아가는 환경 골든벨	1,984	10,000
	6	모아모아와 함께하는 플리마켓	2,136	5,000
	7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2,152	5,000
특별화	8	미래인문학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	2,002	15,000
	9	편백나무 숲 힐링 프로그램	2,130	15,000

2023년 제 3 회 신사2동 주민총회 결과 공고

2024년 실행되는 신사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주민총회 개최 개요

- 운영방식 : 대면 (동)문화행사와 연계 진행
-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및 사전투표소 방문 투표 및 주민총회 현장투표
- 투표기간 : 1) 온라인투표: 2023. 8. 21.(월) 09:00 ~ 2023. 9. 3.(일) 21:00
2) 사전투표: 2023. 8. 21.(월) ~ 2023. 9. 3.(일)
3) 총회현장투표: 2023. 09. 09.(토) 10:00 ~ 14:00
- 대 상 : 신사2동 주민 누구나(투표권: 만17세 이상 주민, 생활주민)
- 참여인원 : 총 2,194명(사전투표 2,153명(온라인투표 145명), 현장투표 41명 / 총 무효표 19표 포함)

2. 주민총회 투표결과

구분	승인 사업	사전투표	현장투표	최종 합계	순위	
프로그램분야 [2전]	1.일상의 실패, 힐링음악회	1,090	17	1,107	1위	
	2.아이드의 꿈에 날개를 달다.	765	14	779	2위	
구분	승인 사업	사전 동의	사전 비동의	현장 동의	현장 비동의	합계
시설분야 [3전]	1.신사2동 관내 전광판 설치	1,916	237	39	2	2,194
	2.어두운 골목길 밝혀주는 로고젝터	1,999	154	39	2	2,194
환경분야 [2전]	1.찾아가는 환경 골든벨	1,945	208	39	2	2,194
	2.모아모아와 함께하는 플라마켓	2,097	56	39	2	2,194
	3.음식을 쓰레기 자원화	2,113	40	39	2	2,194
동독성화분야 [3전]	1.미래 인문학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	1,963	190	39	2	2,194
	2.견백나무 숲 힐링 프로그램	2,091	62	39	2	2,194

3. 주민총회 개최 모습



이상과 같이 신사2동 제3회 주민총회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주민총회 결과에 대한 문의 및 의견 제시는 신사2동 주민자치회(02-3151-03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5일



신사2동 주민자치회장



2023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사진



2023. 2기위원 위촉식



2023. 주민자치회 운영진 리더십 교육



2022 감사



민관협력회의



분과회의



정기회의

활동 사진



주민자치회 2기 임원 선출



분과구성워크숍



2023년 정월대보름 맞이 지신밟기 행사



쌀 전달행사



마을 의제발굴 워크숍



포천시 영북면 자매결연 협약식

활동 사진



역량강화 워크숍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업무협약식



1동1대학 업무협약식



경로당 방문



신사2동주민과 함께하는 공론장



환경개선분과 식재

활동 사진



제3회 주민총회 및 제 11회 비단산 문화축제



구)참여예산 주민총회



2023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제2회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한 불광천 EM휴공던지기



하반기 의제개발 워크숍

2023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소감

양명희

☞ 직장 생활을 하다보며 봉사하는데 시간이 안 맞는다고 빠지게 되었는데 저의 아픔으로 집에서 쉬므로 다른 분께 봉사할 기회가 되니 그나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조금은 쉬엄쉬엄 가라는 의미로 더 건강 잘 챙기는 올해보내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건강해져 활기차게 봉사활동하면서 보내겠습니다.

한종택

☞ 힘들다 느낀 점은 별로없었구요~
즐거움이 많았지요. 아~~~나이에 함께했던 시간이 정말 즐거웠지요. 회장님이하 국장님 간사님 덕분이라 사료됩니다. 남은시간도 파이팅 합시다.

천선우

☞ 항상 신사2동을 위해 봉사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주민자치위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참여 속에 발전할수록 신사2동은 더 나은 동네,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활동을 돌아보고 주민자치회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주민자치회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과 신사2동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기 좋은 신사2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 많은 이웃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웠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일 년이 다 되었네요
내년에는모든 위원님들이 회의도 꼭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희

☞ 주민자치회 한해를 통해 한해를 바라 본다면 제가 주민자치회를 안했다면 몰랐던 것 들이 많았던거 같아요.
많은 곳에서 소리 없이 봉사 하시고 주민들에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열정과 노고를 보며 제 자신이 많이 숙연해 졌습니다.
위원님들 한 해동안 고생많으 셧고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안정옥

☞ 위원님들 적극적 참여로 분과 활성화 등 역할에 충실함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워크숍 등 참여 못해 죄송하고 다음엔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동한

☞ 다른 곳에서 신사 2동 주민자치회가 제일 열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흐뭇했습니다.
나도 덩달아 칭찬받는 것 같아 '아. 편승의 묘미가 여기에 있구나!'하는 기쁨을 맛본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덩달아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사무국장님, 간사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강신호

☞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1년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신사2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술선수법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위원님들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웁니다.

강미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시는 위원님들과 또 뒤에서 응원 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가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모든 시작은 관계에서부터 인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분과원끼리 또 위원들끼리 잠깐식이라도 관계맺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간사님의 모든 위원님들 한 해 고생많으셨습니다.^^

박현숙

좋았던 점 : 신사2동 내 거주지에 관심과 애정 기여하고 싶은 욕구 생김.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센터(관)가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걸 볼 수 있었음. 복지관,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희망적으로 생각.

힘들었던 점 : 개인적인 활동으로 100% 참여하는 일이 힘들었음.

바라는 점 : 분과별 차별화된 사업이었으면 좋겠음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실 내년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병호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서서히 풀리면서 북물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과제와, 금을 캐는 광부같이 의제를 발굴해야하는 복잡한 기로에서도 불과 8개월 만에 해결해야 했던 숙제를 마칠 즈음엔 파스했던 봄날은 온데간데없고 삭풍이 몰아치는 동장군이 눈앞에 버티고 섰네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낸 우리 주민자치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옛 국민학교 졸업식 노래가사 같은 성과를 우리 앞에 놓고 있다. 우리 잔다크라는 작은 거인 회장님을 앞세우고 2024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아듀~계묘년~~

김옥자

주민자치위원으로 지나온 한 해를 신사2동이라는 마을과 모든 주민분들과 함께 다양한 나눔과 활동을 경험하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시간에 자유롭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쉽네요. 새로이 맞이하는 24년은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연옥

주민자치회는 지역과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공동체인 만큼 신사2동 주민자치회는 지금까지 그 정신을 살려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분과의 단합과 소통입니다. 봉사하려고 들어온 만큼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기본이 잘 모여야 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업 실행을 하고자 할 때 모두가 내 일처럼 생각하고 분과원들이 사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공론화하고 기획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참 감사하고 늘 만족스러운 부분은 오랜동안 신사2동의 역사를 써 오신 자치회 회장님과 감사님 부회장님과 그 이하 모든 분들이 단합을 잘 이루어서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 하시는 모습이 늘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 뽕 뽕

임현심

좋았던 점 :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 관심과 사랑으로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에 작은힘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낌

힘들었던 점 : 많은 시간도 아닌데도 봉사활동 하는것이 생각과 마음만으로는 안된다고 느꼈음

내년에 바라는 점 : 새로운 사업 진행시 끌려가는데 아닌 지혜로운 방법으로 예산낭비없이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운영세칙 초안 준비	2021. 2. 2. 제1차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021. 2. 16. 제2차 운영세칙준비위원회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1. 3. 23. 3월 정기회의
운영세칙개정위원회 초안 준비	2022. 3. 25. 제1차 운영세칙준비위원회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2. 4. 12. 4월 정기회의
운영세칙개정위원회 초안 준비	2023. 3. 7. 제1차 운영세칙준비위원회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3. 3. 14. 3월 정기회의

2023. 3. 14.

신사2동 주민자치회

은평구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신사2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란 신사2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회장·부회장·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사무국장·간사·분과위원장,분과총무를 말한다.
7. “고문”이란 신사2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신사2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8. “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신사2동 주민자치회”(이하“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신사2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종교적, 영리적,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4.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5.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사무 위탁·수탁 처리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8조(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대표조직이다.

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위원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례에 따라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한다.
- ④ 예비자가 없을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촉하거나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단, 사전통보 연간 1회 시 예외로 인정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6.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위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장에게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①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 ④ 해촉된 위원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분과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운영진)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된 임원에 대한 신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외의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사무국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간사 1명
 2. 사무국장 1명
 3.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4. 분과총무 각 1명

제12조(임원·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인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신사2동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에 소속된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분과장이 된다.

제13조(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 임원선출의 선정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당해년도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천을 통해 5인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장·부회장·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임원선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4조(임원·운영진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주민자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분과 총무는 분과회의의 결정사항과 분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5조(임원·운영진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원·운영진은 제22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회의 또는 분과회의에 연 3회 무단 불참할 경우(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임원·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제16조(사임) 임원 또는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사임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하면 사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필요한 경우 임원은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자치회장, 임원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 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임원·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 3. 주민과 소통하며 신사2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 ③ 사무국장에게는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 ②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필수 분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을 분과위원, 일반주민을 분과원으로 한다.
- ④ 분과원은 분과활동을 신청한 신사2동 주민으로서 분과회의 참석시 의결권은 있다.
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⑤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총무를 선출한다.
- ⑦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 1. 정기회의
 - 2. 운영회의
 - 3. 민관협력회의
 - 4. 분과회의
 - 5. 주민총회
-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장(또는 간사)은 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제4호의 회의 종료 후 분과장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2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 제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위원의 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운영세칙 제2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3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진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총무로 구성한다.

④ 감사·사무국장은 필요에 따라 출석한다.

⑤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4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 사무국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2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만 17세 이상의 주민(신사2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서면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온라인 주민총회 시 온라인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민대표회의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⑧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운영세칙 변경(제정·개정·폐지)
 - 2. 위원의 위·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
 - 3.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 4. 법령위반 사항 및 의결 실행 불가 사유 발생 시 재의결
 - 5. 운영진의 위촉 및 해임
- ④ 위원이 회의 참석 불가할 시,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받은 위원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1인 초과 위임은 불가하다.
- ⑤ 대면회의가 불가할 경우 서면결의 등을 통한 비대면 의사표시로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

-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3. 월별 추진계획
 - 4. 평가계획
 -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회관 운영

- 제29조(자치회관 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공간운영분과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0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31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 제32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장(또는 간사)이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제34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35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사무국장(또는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사무국장(또는 간사)은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3. 문서접수 및 발급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은 서류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회비) ① 주민자치회 간사는 회비와 위원 관리를 한다.

1. 민관협력 행사시 단체 회비 (축제, 체육대회, 자매결연지방문 등)
2. 현금성 경비 (자치위원 애경사는 본인, 배우자, 양가부모, 자녀에 한한다.)
3. 기타 정기회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4. 회비 사용은 선 의결 후 지출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하여 선 지출도 가능하다.)

